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년월일 : 2018. 0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시책 시행, 비용지원(안 제3조~제4조)

라.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10,000천원 요구 중에 있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06.22.~2018.07.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 평창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취약계층은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장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p>「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평창군수 귀하</p>						

관계법령 발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2. (생략)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 7. (생략)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관련 조문: 안 제4조(비용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초기진압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기초소방시설 보급현황(평창소방서)

연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보급가구	1,598	164	353	554	151	376
소화기	1,539	113	342	552	154	378
감지기	3,262	338	798	1080	294	752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현황

연번	지정일자	대상마을	가구수	연번	지정일자	대상마을	가구수
1	2012.10.12	평창읍 입탄리	41	6	2014.11.13	평창읍 지동리	32
2	2012.11.21	진부면 거문리	36	7	2014.11.25	대화면 개수2리	64
3	2013.02.26	봉평면 유포 3리	31	8	2015.11.10	용평면 노동리	60
4	2013.04.30	미탄면 마하리	33	9	2015.11.13	방림면 계촌2리	42
5	2014.02.13	대관령면 유천2리	52	10	2016.11.22	봉평면 면은1리	125

나. 추계 결과

○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현황(2017.6.30.기준)

(단위 : 세대)

읍·면	합계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총괄	8,024	992	526	3,151	246	38	88	2,983
평창읍	1,500	174	118	592	64	7	11	534
미탄면	465	59	24	195	15	1	7	164
대화면	1,185	141	88	456	17	6	10	467
방림면	781	122	43	293	42	1	9	271
봉평면	845	98	50	359	33	6	9	290
용평면	647	68	39	280	22	2	8	228
진부면	1,700	236	124	626	40	9	20	645
대관령면	901	94	40	350	13	6	14	384

다. 재원조달 방안

○ 산출내역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 (천원)
합계		441,320
소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소화기(3.3kg / 분말형) : 25,000원 <input type="checkbox"/> 자동감지기 : 15,000원 <input type="checkbox"/> 1세대 기준 : 소화기 1개, 자동감지기 2개 ※ 1세대 : 25,000 + (15,000×2) = 55,000원	-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지원	<input type="checkbox"/> 8,024세대 × 55,000원 = 441,320,000원	441,320

○ 군비 예산 편성 : 연차별 지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연락처	(033) 330 - 240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계
세 입							
세 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일반운영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이하		빈칸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